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30호 2020. 1. 15(수)

조례

장수군 조례 제 2390호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
장수군 조례 제 2391호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6
장수군 조례 제 2392호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1
장수군 조례 제 239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
장수군 조례 제 2394호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28
장수군 조례 제 2395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31
장수군 조례 제 2396호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3
장수군 조례 제 2397호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55
장수군 조례 제 2398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훈령

장수군 훈령 제 569호	장수군 성희롱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	63
---------------	----------------------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20-50호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5
장수군 공고 제 2020-58호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0

공고

장수군 공고 제 2020-67호	보상계획공고	86
-------------------	--------	----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조례 제 2390호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수군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한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

2. 복지, 문화, 산업경제, 농업·농촌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군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행정, 법률,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문화관광,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5. 장수군의회 의원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지원) 군수는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및 사무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기획단이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결과보고 등) ① 단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획단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간사)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수용한 장수군의 군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화·개방화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모색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능 규정(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장수군 조례 제 2391호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제2조)
-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방안 규정(제3조부터 제9조까지)

장수군 조례 제 2392호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운영)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장수군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장수군에 큰 재산 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10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 · 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 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제16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7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5명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익신고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 법무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제16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성사업) ①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 홍보

제5장 보 칙

제1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등

제20조(표창의 수여 등)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장수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자체규정 제정 요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6(2018.7.26.), 1104(2019.6.26.)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마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 공익신고 업무처리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

나.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인적사항 비밀유지, 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구조금 지급 안내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심의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인력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도 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지정,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관련 공적자 표창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라. (공익신고 관련)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공익신고 관련 시책추진 기업 선정 및 우수기업 우대

- 공익신고 빈발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사업 추진

마.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등(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공익신고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업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 · 접수 · 처리 · 보호지원 업무총괄

장수군 조례 제239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자체 자체 발굴 과제 정비

제2조(「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공

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조(「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장수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장수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를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지출원·출납원”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지출원·출납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장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제5조(「장수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장수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50인 이상으”를 “150명 이상 200명이하로”로 한다.

제7조(「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한다)를 ”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한다)를”로 한다.

제8조(「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9조(「장수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장수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10만원이상”을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1조(「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장수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제16조(「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정양”을 “요양”으로 한다.

제17조(「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정양”을 “요양”으로 한다.

제5장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제18조(『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리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9조(『장수군 포상 조례』의 개정)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 앙양”을 “순화”으로 한다.

제20조(『장수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6장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제21조(『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반환)”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 자체 발굴 과제, 법제처 협업과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지자체 적극행정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등 지자체 자율정비과제와 중앙부처 기획정비과제를 개정하여 신속한 법 적합성 확립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자체 발굴 과제 정비(제2장)

- 1) 개정내용 : 2019년 지자체 자체 발굴 과제 정비
- 2) 개정대상 :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

나.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제3장)

- 1) 개정내용 : 중앙부처 협업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과제
- 2) 개정대상 : 「장수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외 10건

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4장)

1) 개정내용

– 정양 → 요양

- 2) 개정대상 :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외 1건

라.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5장)

1) 개정내용

– 통리 → 총괄

– 앙양 → 드높이다, 북돋우다

– 폭원 → 너비

- 2) 개정대상 :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 대책위원회 조례」 외 2건

마.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제6장)

- 1) 개정내용 : 과오납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 조례에 반환 규정이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민불편 및 권익 침해 우려되므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권익보호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과오납한 경우 반환규정 신설
- 2) 개정대상 : 「장수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외 2건

장수군 조례 제2394호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세계 OECD 국가 중 위생용품 가격이 가장 비싼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관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부터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제3조)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 지원방법 : 보건위생용품 직접 교부 또는 구입비 지원
 - 지원액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지침 준용
- 다. 지원계획의 수립(제4조)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
 -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 우선 활용 원칙)
- 라. 중복지원 금지(제5조)
- 마. 환수 등(제6조)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

장수군 조례 제2395호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단순 집행적 사무
- ②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부담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장비 · 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장수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25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 본문의 위탁기간 연장은 재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과정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1년에 1회 이상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등) ①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현재 장수군 민간위탁 조례의 경우 민간위탁 시 사전검토사항이나 사후관리 방안 등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체가 어려운 상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신설(제6조)

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방안 신설

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규정 마련(제9조 및 제10조)

2)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제13조 및 제14조)

-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3)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5조)

라. 사후 관리 ·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방안 신설

1)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제22조)

2)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제16조)

3)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해지사유로 명시(제26조)

장수군 조례 제2396호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동상 · 탑 ·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 나. 벽화 · 분수대 · 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총괄부서”란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신청)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장수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예술 · 과학기술 등의 진흥 ·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6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 ·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 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 · 묘소 · 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 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 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 또는 설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청자	성명(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설치 대상	사업명		
	설치위치		
	규 모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업명 :

2. 설치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규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질 :

4. 작품설명 :

5. 제작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그밖의 사항

(작품의 보수·이전·교체·해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항 목	세 부 계 획	비 고
관리자	가. 설치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별지작성 가능
조형물 등 보수 계획	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기(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p>(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p>	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관부서 검토의견 포함 <p>(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p>	별지작성 가능

상기 사후관리 계획서는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설치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		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		사업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상 (재질)	
설치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주관부서		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제430호

군 보

2020. 1. 15(수)

(뒤쪽)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 7")

1. 제정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선정, 설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운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 신청(제4조)
- 나. 설치 대상(제5조)
- 다.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제6조)
 - 작품성, 독창성, 조형성, 주변과의 조화 등
-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제11조)
 - 1) 주관부서 : 신청서 접수, 사전타당성 조사(필요성, 장소여건, 해당주민의 의견)실시, 위원회에 심의의뢰, 심의결과 설치주체에 통보
 - 2) 총괄부서 : 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 3) 설치주체 : 주관부서로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 바. 주관부서의 공공조형물 관리(제13조)
 - 관리대장 비치, 보수, 관리상태 점검(연 1회)

장수군 조례 제2397호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 · 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 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단체 등에 치매환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
2. 치매가족모임 지원사업
3. 치매환자 재활치료 및 인지강화프로그램사업
4. 지역 치매등록 통계사업
5.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치매관리법 및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에 따라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 나. 정의(제2조)
- 다. 책무(제3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등(제4조)
- 마. 실태조사(제5조)
- 바. 지원대상(제6조)
- 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제7조)
- 아. 위탁(제8조)
- 자. 비용의 지원(제9조)
- 차. 비밀누설의 금지(제10조)
- 카. 시행규칙(제11조)

장수군 조례 제2398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을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 시설”을 “가공시설”로, “위하여”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자치법규안 검토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위탁관리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대상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의 개정(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은”으로 변경
-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포함

나. 관리위탁 규정 개정(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장수군 훈령 제569호

장수군 성희롱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

장수군 성희롱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1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성희롱 예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소속구성원(장수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구성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 되며, 장수군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구성원 등으로부터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 운영
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 · 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① 군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자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용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

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 2.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사를 신청한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사·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장수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피해자 등 및 피신고인을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등 결과통지) 군수는 조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군수는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 또는 징계 등 제재 절차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의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실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 (신청)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2. 공개사과()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위 신청인은 「장수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1. 개정이유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방조치 관련 조문 신설의 개정(2016. 11. 30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지침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장수군 성희롱 예방 규정」⇒「장수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나. 성폭력예방 근거 법령 추가(제1조)

다. 성희롱에서 성희롱 · 성폭력으로 적용범위 확대 및 공직유관기관(공사, 출자 · 출연기관 등)까지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3조, 제5조)

라. 고충상담창구 운영, 상담 및 조사(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징계 및 재발방지 노력(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장수군 공고 제2020-50호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군수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 예산·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 효과성, 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사요구의 증대 및 상급기관의 보조금감사팀신설('19.7월)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분야별 자체감사 요구 증대
- 나. 이에 따라, 현행 자체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각종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대상을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감사의 주기를 기존 2년에서 2~3년에 1회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3. 금후계획

가. 조례 · 규칙(안) 입법예고 : '20. 1월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 2월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 · 의결 : '20. 2월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장수군(기획조정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팩 스 : 063-350-5702
- E-mail : elmo3142@korea.kr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전화 063-350-2056)에 문의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2년’을 ‘2~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p> <p>② 종합감사는 <u>2년</u>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p>	<p>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p> <p>② 종합감사는 <u>2~3년</u>에 ----- ----- -----.</p>

장수군 공고 제2020-58호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단순 반복적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심의 필요성 및 실익이 적고 자치단체 업무 과중 초래
-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적시적기에 행정력 투입을 하여 군민에 편의증진 및 장수군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적용범위 제3조제4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개정함
-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기술 · 전산 ·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금후계획

- | | |
|----------------------|-----------|
| 가. 조례 · 규칙(안) 입법예고 | : '20. 1월 |
|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 '20. 2월 |
|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 · 의결 | : '20. 2월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장수군(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팩 스 : 063-350-5702
- E-mail : ojh4001@korea.kr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예산팀(전화 063-350-2048)에 문의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 · 전산 ·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3. (생 략)</p> <p>4. <u>1천만원</u> 이하의 학술연구용역 <u>〈신 설〉</u></p> <p>5.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2천만원</u> -----</p> <p>5. <u>기술 · 전산 ·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장수군 공고 제2020-67호

『장계 신동로(소로3-30호)개설사업』

보상 계획 공고

장수 군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장계 신동로 개설사업(소로 3-30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16일

장수군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장계 신동로(소로3-30호)개설사업
- 시행자 : 장수군수(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사업위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935번지 일원(청기와식당~장계천변)
- 사업량 : L = 55M B = 6M
- 사업기간 : 2020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소유권외의 권리 포함)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보상협의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도시팀)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년 01월 16일 ~ 2020년 01월 30일(공고 익일부터14일이상)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의해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4. 보상시기 : 별도통보

5.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에 대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통지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35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계면 장계리	935-1 (935)	대	151	87	김춘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12동 1305호		
2	장계면 장계리	973-2 (973)	답	480	25	이강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아파트 117동902호		
3	장계면 장계리	980-1 (980)	답	729	109	이강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아파트 117동902호		
4	장계면 장계리	986-1 (986)	대	221	98	육진수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70-17		
5	장계면 장계리	988-1 (988)	답	83	13	이강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아파트 117동902호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